

	<p><u>라 산출한 시 · 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,</u>  <u>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 및</u>  <u>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 방식에 따라 산정</u></p>
8. (생략) ③ 삭제 ④ ~ ⑧ (생략)	8. (현행과 같음) ④ ~ ⑧ (현행과 같음)